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http://www.daedeok.go.kr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제2019-58호
2019. 9. 11.(수)

차 례

고 시(1)

-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19-106호)1

공 고(1)

-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(공고 제2019-789호)2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9월 1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	비고
오정동 379-1	오정로 38	2019. 9. 11.	건물신축	행정구역명(오정동)을 반영	
오정동 379-22	오정로38번길 8	2019. 9. 11.	건물신축	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신대동 411-11	회덕로33번길 144	2019. 9. 11.	건물신축	회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(☎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<http://www.juso.go.kr>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◆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91-5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6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공고하는 사항

구 분	위 치	도 로 구 분			소유자
		면 적	너 비	길 이	
건축법상 도로지정	와동 91-5	19.4㎡	1.0m	18.27m	김병권

2. 기 타

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(☎042-608-5153)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